

취·창업지원규정

제정	2010.07.01	개정	2012.09.10
개정	2013.07.23	개정	2014.02.07
개정	2015.02.27	개정	2016.05.12
개정	2017.08.14	개정	2018.10.19
개정	2019.09.19	개정	2020.06.02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·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학생의 취·창업지원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학생의 진로 및 취·창업에 관한 기획, 교육, 홍보, 연구, 조사
2. 학생의 진로 및 취·창업지원을 위한 개인·집단상담 및 직업심리·적성 검사
3. 취·창업에 관한 특강 실시 및 정보 제공
4. 취·창업 편의 도모
5. 학생의 폭넓은 사회경험과 취업연계 기회의 제공<개정 2017.8.14.>
6. 학생의 안정적 취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<개정 2017.8.14.>

제2장 취·창업운영위원회<개정 2017.8.14.>

제3조(운영위원회) 취·창업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취·창업지원 자문기관으로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개정 2017.8.14.>

제4조(위원회구성)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를 두되 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.<개정 2017.8.14., 2019.09.19.>

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, 외부 인사를 최대 3인까지 위촉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학생취업처 직원으로 한다.<개정 2017.8.14., 2019.09.19.>

제5조(위원회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회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

1. 취·창업률 향상방안 및 지도를 위한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취·창업지원계획의 운영결과 분석, 평가, 개선에 관한 사항
3. 취·창업 홍보활동에 관한 규정 및 홍보 활성화에 관한 사항
4. 취·창업지원에 관련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5. 취·창업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7. 취·창업관련 외부사업운영에 관한 사항<개정 2017.8.14.>
8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개정 2017.8.14., 2019.09.19.>

제7조(위원회 소집 및 의결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<개정 2017.8.14.>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17.8.14.>

제8조(결과보고)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.<개정 2017.8.14.>

제9조(준용)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취·창업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.

제3장 취업·창업 및 규제조치

제10조(취업·창업시기) 재학생에게 취업, 창업을 허락하는 시기는 졸업학년도로 하되 그 구체적인 시기는 총장이 정한다.

제11조(취업·창업추천) ① 취업·창업의 추천의뢰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한다.

1. 각 학과는 취업의 추천을 의뢰 받은 경우 학과 교수회의에서 대상자를 선발 추천하고, 그 내용을 학생취업처에 통보한다.<개정 2017.8.14., 2019.09.19.>

2. 재학생이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를 학과로 제출하고 학과 교수회의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그 내용을 학생취업처에 통보한다.<개정 2017.8.14., 2019.09.19.>

② 재학생의 창업의 승인, 창업휴학, 창업학점대체, 창업학점교류 등 재학생 창업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7.8.14.>

제12조(취·창업추천제외규정)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취·창업추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1. 재학 중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품행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자

2. 본 대학교 추천에 의하여 취업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업처를 무단 사직한 자

3. 총장이 정하는 일정 성적에 미달하는 자

제13조(추천서발급) 재학생의 취업, 창업에 관련된 추천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학생취업처를 경유하여 총장이 추천서를 발급한다.<개정 2017.8.14., 2019.09.19.>

제14조(구직표 작성) ① 재학생은 본 대학교 입학 시 구직표를 작성하도록 한다.<개정 2017.8.14.>

② 재학생은 구직표 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기재내용을 수정한다.<개정 2017.8.14.>

제15조(취업확인서 제출) 재학생으로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취·창업확인서 또는 취업처의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을 소속 학과에 제출해야 한다.

제16조(변동사항 통보) 재학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자에게 직무상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그 변동내용을 소속 학과를 경유하여 학생취업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8.14., 2019.09.19.>

제17조(의무)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후배들의 취업 또는 창업기회 확대를 위해 근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유용한 취업 또는 창업정보를 학생취업처나 소속 학과에 수시로 알려야 한다.<개정 2017.8.14., 2019.09.19.>

제18조(규제조치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장이 취업 또는 창업을 취소할 수 있으며, 해당학생은 취소통지문을 수령하는 즉시 수업에 임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8.14.>

1. 취·창업사실이 허위인 경우<개정 2017.8.14.>

2. 취·창업 중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자주 등교하여 학습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3. 취·창업 중 이탈행위로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
제4장 취·창업담당교수 및 각종 특강, 교육<개정 2020.06.02.>

제19조(취·창업담당교수) ① 매년 각 학과별로 취·창업담당교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취·창업 담당교수는 학과장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.

② 취·창업담당교수는 학과의 취·창업 교육 및 상담, 취업처 발굴 등 취·창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

총괄한다.

[본조신설 2020.06.02.]

제20조(절차) ① 각 학과는 특강이나 교육을 실시할 경우 계획(안)을 작성하여 학생취업처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7.8.14., 2019.09.19.>

② 특강이나 교육의 실시 후 실시결과 및 정산내용을 학생취업처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8.14.>

제21조(강사수당) 교내·외 특강의 강사료는 교육부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며, 필요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[본조 신설 2017.8.14.]

제5장 졸업자 추수지도

제22조(추수지도 방식) ① 각 학과와 학생취업처는 졸업자 중 미취업자 또는 이직자가 본 대학교의 구직희망서를 작성하여 구직을 희망할 경우 취업관련 정보 및 채용정보, 각종 취업교육 정보 등을 제공한다. <개정 2017.8.14., 2019.09.19.>

② 학생취업처는 졸업자 중 창업에 관한 지원과 정보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각종 창업정보, 창업 상담 및 창업 교육 등을 제공한다. <개정 2017.8.14., 2019.09.19.>

제6장 NCS 기반 취업지원

제23조(진로 · 취업 상담 및 구직활동 지원) ① 학생취업처에서 재학생 및 졸업자에게 진로 · 취업 관련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지원하고자 하는 일자리에 요구되는 학과별 NCS 분석자료를 기초로 한다. <개정 2017.8.14., 2019.09.19.>

② 인 · 적성검사는 재학생 및 졸업자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해 NCS 직업기초능력 지표에 근거한 검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.

③ 구직을 위한 입사지원서 작성법 지원 시에는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 관련 경험, 자격 위주로 작성하도록 지도한다.

④ 채용 면접은 재학생 및 졸업자가 직무 관련 경험, 상황대처능력 등 입사지원서와 연계한 구조화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능력 위주로 평가 및 지도한다.

제24조(진로 ·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실시) 학생취업처 또는 학과 주관으로 산업체 견학, 채용박람회 및 기업설명회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산업현장의 직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. <개정 2017.8.14., 2019.09.19.>

제7장 창업지원센터

제25조(명칭) 본 창업지원센터는 국제대학교 창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6조(사업) 본 센터는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체 수요 및 현장 중심의 창업교육 발전을 지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.

1. 창업자 육성 사업방향 수립
2. 창업자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
3. 창업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
4. 창업자 육성 관련 세미나 및 학술활동 지원

5. 학생의 창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각종 행사 지원
6. 대학 내 부서와의 협력·연계 및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 지원
7. 창업교육지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
8.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을 필요한 사항

제27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학생취업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7.8.14., 2019.09.19.>

-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, 창업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센터장의 임기는 임명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28조(직원) 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제29조(운영위원회) 센터의 주요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취·창업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다.<개정 2017.8.14.>

제30조(재원)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정부지원금
2. 지방자치단체 지원금
3. 학교 지원금
4. 기타 수입

제31조(승인) 센터의 예·결산,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은 취·창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7.8.14.>

제8장 대학일자리센터 삭제 <2018.10.19.>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0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②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창업업무의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②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취·창업지원업무의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취·창업지원 및 창업지원센터 업무의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취·창업지원, 창업지원센터 및 대학일자리센터 업무의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